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10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2.

발 의 자 : 김태규 · 김기현 · 김대식
이종배 · 박성민 · 김기웅
최은석 · 서범수 · 안철수
이상희 · 이현승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으며,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와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각각 100분의 20과 100분의 30으로 상향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.

그런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가임기 부부가 겪는 대표적 사회문제 중 하나로서 그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여 출산 필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가임기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의4

제2항).

법률 제 호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,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”을 “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한 의료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① (생략)	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)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(<u>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,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</u>)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3호와 제4호</u> <u>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③ ~ ⑪ (생략)	③ ~ ⑪ (현행과 같음)